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1040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섭

변 론 종 결 2021. 8. 31.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11. 12.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4. 26.경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2. 4. 30.으로 한다.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C의 부 D는 2019. 6.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9.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배우자인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라 한다).

다. C는 2004. 2. 16. D로부터 아산시 E 답 2,587㎡ 등 4필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4.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여받을 당시 E 토지에는 근저당 등의 부담이 없었고, C가 2004. 12. 9.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E 토지는 2012. 7. 24.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2019. 11. 12.경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잔액 133,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2019. 11. 12.경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74,182,000원이고, E 토지의 가액은 781,70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자 채무초과상태이던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D의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74,182,000원과 생전 증여된 E 토지의 가액 781,701,000원을 합한 1,255,883,000원(= 474,182,000원 + 781,701,000원)에 C의 법정상속분(2/15)을 곱한 금액은 약 167,451,067원이고, 여기에서 C의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가액 781,701,000원을 빼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E 토지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증여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증여받을 당시 E 토지에는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었고, 2004. 12.에 이르러 C가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비로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아산시 대660㎡

2. 충청남도 아산시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48.4㎡

